



의료보험GUIDE (VI)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는 9일 의료보험조합 통합 일원화를 기초로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에 앞서 8일 보사委内에서 여·야가 통합일원화법안(의료보호제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라 의료보험 연합회와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은 범시행일로 부터 1년 6월 이내에, 직장·지역·지역임의조합은 범시행일로 부터 2년 6월 이내에 해산된다.

1) 총칙, 피보험자, 보험자

이 법은 의료보험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사부내에 도시자영자, 농어촌자영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사용자, 의약계 및 공익 대표들로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보험자로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필요에 따라 지부출장소를 둘 수 있게 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무이사 6인, 피용자, 자영자, 의약계를 포함,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은 대통령령, 전무·상무이사 및 감사는 보사부장관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급여

이 법은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기준등의 요양급여 기준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사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보사부에 공단과 의약단체로 부터 각 4인, 공익대표위원 2인으로 의료보험수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있다.

요양취급기관 계약은 공단과 요양취급기관 간에 체결하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은 공단에서 지정토록 하고있다. 다만 공단과 요양취급기관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않아 보험급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때 보사부장관은 요양취급기관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때까지 요양공급을 명할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또는 이행을 기피한 요양취급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진료비심사를 위해 보험급여비용심사원을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기간을 종전의 180일에서 연간 210일 이내로 하되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算入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3) 재 무

지금까지 정부재량에 맡기던 국고부담을 이 법은 의무화시켰다.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되 일정표준소득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일정표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재산이상의 재산에 대해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4) 부 칙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은 이법의 효력발생과 함께 폐지토록 하되 도시지역 醫保실시를 위한 조합설립등 필요한 사항은 현행 의료보험법 규정을 적용하고 보험급여비용심사원, 의료보험수가 조정위원회가 설립, 구성될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 수행토록 하고 있다.

끝으로 보사부장관은 이법 시행일로 부터 1

년내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10인 설립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현 행	개 정 법
보 험 자	개별조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 기준결정 수가조정 지정여부	보 사 부	의보심의
심 사	보 사 부	의보수가조정
	지 정 재	계 약 제
	보 험 자	보험급여비용 심사원(독립기구)
보 험 료 부과대상	직장 : 표준보수월액	표준소득 또는 재산(일정수준 이상은 누진율 적용)
	지역 : 세대, 가족, 소득, 재산	

〈치의신보 529호 1989. 3. 18일자 인용〉

CHOI'S DENTAL LAB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송인동 1081
923-6671 · 923-2998

SMS 서진 메디칼 시스템
SUH JIN MEDICAL SYSTEM

전화 : (02) 6 7 5 - 0 0 9 0
· 연구소 및 A/S : (02) 887-7679

◇ 이전안내 ◇

평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주소가 바뀌었기에 알
려드립니다.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 2 가 30-2
영등포유통센터 2층 16호